

#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정관

제정 2021. 11. 23. 정관 제1호

개정 2022. 5. 30. 정관 제2호

개정 2022. 12. 27. 정관 제3호

개정 2023. 9. 22. 정관 제4호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은 「지방공기업법」과 「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천군수가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함으로써 군민생활의 편의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공단은 합천군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 영문으로 HapCheongun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(약호 HFMC)라 표기한다.

**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**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합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(출장소)를 둘 수 있다.

**제4조(자본금)** ① 공단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하고 군이 전액 출자한다.  
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합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정한다.

**제5조(공고방법)** 공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군이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경상남도 안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.

**제6조(규정의 제정)** ①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. 다만, 자체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.  
②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 
1.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
2. 인사규정, 임직원의 보수규정(연봉제규정, 복리후생규정 포함) 및 퇴직금규정(명예 퇴직규정 포함) 등 중요한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
3. 그 밖에 이사장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제2장 사업

**제7조(사업)**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별표1의 시설 관리 및 운영

2. 국가, 군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3. 제1호 및 제2호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또는 대행사업

**제8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** ① 공단은 국가, 군 및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.  
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.  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「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21조제3항에 따르고,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9조(사업계획서)** 공단은 매년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**제10조(사업의 집행)**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2. 예산 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
3. 요금, 사용료 등 결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 제3장 임원 및 직원

**제11조(임원)** ① 공단의 임원은 9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로 한다.  
1. 이사장 : 1명  
2. 이 사 : 7명 이내  
3. 감 사 : 1명  
② 비상임이사 중 군의 안전건설국장, 기획예산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한다. <개정 2023. 9. 22.>  
③ 감사는 비상임으로 군의 재무과장이 된다.  
④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이사장·비상임이사·감사는 군수가 임명하며, 상임이사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. 단,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는 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

**제12조(임원의 임기)**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 
②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기준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다.

- ③ 임원의 해임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.
- ④ 당연직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13조(임원추천위원회)**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되, 비상설로 한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.
-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부장이 된다.
-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4조(임원의 직무)**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
- ③ 이사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,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.

**제15조(조직 및 정원)** ① 공단의 조직은 별표2와 같다.

- ② 공단의 정원은 별표3과 같다.
- ③ 이 정관이 정한 이외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
- ④ 공단은 시설물 관리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정규직을 둘 수 있다.

**제16조(직원의 임면)** ①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

-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, 업무의 성격·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.

**제17조(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(이하 “임직원”이라 한다)이 될 수 없다.

-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- 2. 미성년자
- 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「지방공기업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② 공단의 임직원이 된 후 제1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
**제18조(임직원의 복무)** 임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**제19조(임직원의 겸직제한)**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,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**제20조(임직원의 징계 등)** ① 군수는 이사장, 비상임이사(당연직은 제외한다) 및 감사에 대하여 징계사유 발생 시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, 이사장은 상임이사 및 직원에 대하여 징계사유 발생 시 상임이사는 이사회에,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

②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다.

**제21조(임직원의 보수)** ① 공단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②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자기 소관사무 (소속기관 사무 포함)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을 제외한 비상임 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.

**제22조(비밀누설 금지 등)** 공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23조(임원의 대표권 제한)**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,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.

**제24조(대리인의 임명)**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직원 중에서 공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## 제4장 이 사 회

**제25조(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)**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26조(의결사항)**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4. 조직·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5.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
6.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
7.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·수탁 및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
8.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
9. 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10. 잉여금처분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
11. 공단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
12. 임원(당연직은 제외한다)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
13. 공단 해산에 관한 사항
14. 그 밖에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

**제27조(이사회의 참여 제한)** ① 이사장과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제1항 중 친족의 범위는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다.

**제28조(의장 및 소집)**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명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며,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,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회의 의안 중 의장이 제27조에 따른 참여 제한 임원인 경우에는 감사가 임시 의장이 된다.

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일주일 전에 회의목적,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**제29조(의결방법)**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1.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
  2.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3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4. 조직·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  5. 임원(당연직은 제외한다)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
  6. 공단 해산에 관한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**제30조(서면결의)**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**제31조(재심요청)** 이사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32조(의사록 작성)**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.

**제33조(운영규정 등)**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.

## 제5장 재무회계

**제34조(사업연도)**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35조(회계처리의 원칙)** ① 공단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  
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36조(예산)** ① 공단은 매년 사업연도의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개최 20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,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  
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37조(수입 및 정산)** ①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  
1. 군에서의 전입금  
2. 위탁자의 사업 대행수수료  
3. 그 밖의 재원  
② 제7조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의 수익으로 하며, 그 다음날까지 군의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38조(결산)** ① 공단은 매년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 
② 공단의 이사장은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결산 완료 후 관련 서류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제6장 보 칙

**제39조(정관의 변경)**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40조(공무원의 파견요구 등)** ①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군수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 
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는 따로 정한다.

**제41조(경영평가)** ① 공단은 매년 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.  
② 공단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이사장의 임면과 공단의 업무개선 평가급에 반영하고 공단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, 자문 또는 권고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**제42조(시행규정)**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 [제1호, 2021.11.23.]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최초임원의 임기)** 공단의 최초 임원 임기는 공단의 설립일부터 기산한다.

**제3조(최초의 사업연도)**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조례 부칙 제6조에서 정한날로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.

**제4조(권리의무의 승계)** 공단은 군이 출자 및 관리 위탁한 자산의 권리·의무를 포괄 승계한다.

**제5조(경과규정)** ① 공단의 설립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가 정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.  
②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, 인사규정,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 제규정과 금고의 지정 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 [제2호, 2022.5.30.]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층 [제3호, 2022.12.27.]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층 [제4호, 2023.9.22.]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, 2023년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.